

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동현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(안 제4조)
-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민간위탁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나 이견이 없었으며, 도지사 의견(문화예술산업과) 중 일부 수정요구에 대해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
 - 안 제2조(도지사의 책무)에서 제2항 중 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’은 헌법 제22조 ‘예술의 자유’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,
 - 안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서 ‘기본계획’보다는 문화예술의 유동적 흐름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계획으로 수정,
 - 안 제7조(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)은 민간위탁 사무 해당여부, 민간위탁 선정절차 검토결과 선정 과정의 복잡성, 지원의 비효율성 등으로 ‘공연활성화’의 추진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확정하였음.
-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조례안 제2조(도지사의 책무)에서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며, 거리공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계획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또한 안 제7조(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)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“~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한 임의규정이므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-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극복 후 도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화시설에서 하는 공연 외에도 거리공연 활성화가 필요하며 충청북도는 도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. 끝.